

- 제 정 : 2018.12.05.
- 개정(1) : 2019.08.09.
- 개정(2) : 2020.10.26.
- 개정(3) : 2020.12.08.
- 개정(4) : 2020.12.21.
- 개정(5) : 2022.07.01.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상공인간편결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자금융업자, 금융회사, 소상공인간편결제 운영기관과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참여사업자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운영기관(이하"운영기관"이라 함) 간 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하며, 참여결제사업자의 간편결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② "소상공인간편결제"란,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에서 모바일 등으로 거래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제11호에 의한 전자지급거래를 말합니다.(이하, "간편결제"라 함)
- ③ "참여결제사업자"란, 간편결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운영기관과 간편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휴 서비스 계약을 근거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④ "간편결제회원"이란, 참여기관과 회원계약 또는 참여기관과의 제휴 서비스 계약 또는 운영기관과의 제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외국인 포함)를 말합니다.(이하, "회원"이라 함)
- ⑤ "운영기관"이라 함은, 간편결제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참여기관을 대리하여 가맹점과 간편결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⑥ "결제매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간편결제 기술표준에 부합되고, 금융위원장이 검토하여 보안성 등을 인정한 것으로 모바일을 활용하여 결제 처리할 수 있는 QR키트, 단말기 등의 장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①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회원이 간편결제를 요청할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는 전자지급수단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금전채무의 상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3. 예금, 적금 및 부금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 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단, 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 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 6.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8. 「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9.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10. 기타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 ② 가맹점은 참여기관 이외 결제사업자의 회원에게는 간편결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의 계약에 의해 특정 참여사업자의 회원에게만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관 간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은 참여기관과 운영기관간 제휴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간편결제 회원에게 간편결제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수수료율, 거래승인 또는 취소, 가맹점 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등이 이 약관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간편결제

제4조 (간편결제의 방법)

- ① 간편결제는 가맹점이 유효한 가맹점 정보가 수록된 결제매체를 회원에게 제시하고 회원이 참여기관과 운영기관 간의 유효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동 가맹점 정보를 인식하거나, 회원이 본인의 결제비밀번호 입력한 후 참여기관의 유효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QR코드 또는 기타 결제매체로 가맹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거래가 완료됩니다.
- ② 가맹점은 본 조 제1항에 의한 거래승인이 완료된 경우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과 거래고유번호, 가맹점명, 가맹점관리번호,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등 운영기관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된 영수증(매출정보)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과 가맹점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의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단말기 또는 기타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참여기관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이 매출정보에 작성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⑤ 1건의 매출정보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작성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건 이상의 매출정보로 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⑥ 매출정보 내의 금액 또는 본 조 제2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매출정보를 본 조 제3항의 방법으로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한 후 정

상내역으로 거래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본 조 제3항의 방법으로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⑧ 가맹점이 폐업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간편결제 관련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점은 운영기관으로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유효한 간편결제를 제시한 회원에게 간편결제를 거부 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다른 결제수단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결제계좌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③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간편결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가맹점은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⑤ 가맹점은 간편결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⑥ 가맹점은 간편결제거래 매출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⑦ 가맹점은 간편결제 거래로 생긴 채권(참여기관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참여기관 이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⑧ 가맹점은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⑨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⑩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본 조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위반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을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⑪ 가맹점이 본 조 제10항의 조사 결과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간편결제 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6조 (가맹점수수료율)

- ①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은 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② 운영기관은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 전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

은 가맹점은 동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기관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운영기관은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참여기관과의 제휴 계약에 의한 간편결제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 간편결제회원에 대한 거래시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의 금융회사 또는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식 카드를 지급수단으로 하는 경우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⑤ 운영기관은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본 조 제5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운영기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⑦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3 제2항 등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우대 수수료율을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에 통보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⑧ 가맹점이 본 조 제7항에 따른 소상공인가맹점이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소상공인수수료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기관은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적용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 ⑨ 본 조 제8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변경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운영기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⑩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2.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⑪ 운영기관은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7조 (간편결제판매대금의 지급)

- ①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간편결제 판매에 대하여 매출정보를 수신한 경우, 동 수신일로부터 제8조 제1항에 의한 간편결제 판매대금 지급일에 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참여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②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참여기관은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하며, 참여기관과 운영기관간 책임의 분담은 양 당사자의 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가맹점은 참여기관과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참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참여기관은 가맹점의 간편결제 판매대금을 본 조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별도 처리 절차에 따라 입금을 완료합니다.

⑤ 참여기관은 간편결제 판매대금 지급시 판매대금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를 곱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 등의 사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관의 취소정산 정책에 따르기로 합니다.

⑥ 운영기관은 홈페이지에서 간편결제 거래 승인내역·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8조 (간편결제판매대금의 지급주기)

① 참여기관은 매출정보가 참여기관에 수신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간편결제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영업일을 초과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 참여기관 및 운영기관이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1항에 따라 간편결제 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지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기관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간편결제 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 (대금의 환입 및 상계)

① 가맹점이 전송한 매출정보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또는 제4조 제7항에 의해 취소된 거래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참여기관에 환입하거나 또는 참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맹점의 입금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회원에게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기관이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참여기관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참여기관은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

내하고, 가맹점은 거래승인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참여기관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참여기관은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제10조 (간편결제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①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간편결제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간편결제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제17조 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4조 제5항, 제5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가맹점 신청 서류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③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제12조에서 정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간편결제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기관이 가맹점에 이미 간편결제 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간편결제 부정사용 또는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그 거래에 대한 사고 조사 기간 동안 최장 30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제5조 제10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으로 해당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간편결제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 (간편결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간편결제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거래

② 본 조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가맹점이 본 조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 전자지급수단이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4. 참여기관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제12조 (회원과의 분쟁)

간편결제를 통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분쟁은 가맹점과 회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운영기관의 중재가 있는 경우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3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은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은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17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기관이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5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참여기관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간편결제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기관이 간편결제 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6.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7.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제5조 제1항, 제8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관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기관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참여기관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6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4. 참여기관이 일방적으로 간편결제 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참여기관과 가맹점 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 5 장 신용정보 보호

제14조 (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참여기관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간편결제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참여기관은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간편결제 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가맹점은 간편결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회원과의 간편결제 판매, 참여기관과의 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간편결제 토큰 및 CI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고 금융위원장이 검토하여 보안성 등을 인정한 결제매체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운영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결제매체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참여기관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본 조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장 서비스 제공

제16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① 가맹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간편결제를 활용한 서비스(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모바일 상품권,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 수당, 해외결제, 신용카드, 현금카드, 모바일 포인트, 휴대폰 결제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 자동 가맹된 것으로 보고 가맹점과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항목별 가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

② 단, 가맹점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에 개별 서비스 가맹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보칙

제17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참여기관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간편결제 판매대금 지급주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참여기관은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가맹점은 참여기관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참여기관에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참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본 조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참여기관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은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가맹점 표지물)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정보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간편결제 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참여기관, 운영기관 그리고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간편결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참여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제5조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참여기관과 운영기관간 대리계약에 의거 운영기관이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운영기관은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턴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1조 (업무편의 제공)

① 가맹점과 참여기관은 별도의 가맹계약 없이 운영기관과의 가맹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② 가맹점은 대금 정산에 필요한 참여기관에 직접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가맹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정산에 필요한 업무를 참여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운영기관은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서면,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참여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참여기관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참여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참여기관은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기관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속약관

제1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 ①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과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등록됩니다. 다만, 운영기관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과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닙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대행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 또는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3조(가맹점 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가맹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보유, 가공, 검색, 이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매장주소, 매장전화번호, 업종, 직전년도 연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2. 거래내역 정보(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
3. 개인식별정보(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휴대폰, 주소, 이메일, CI(Connection Information))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등록·등록취소
3. 지역사랑상품권 재발급
4.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지역사랑상품권 참여기관은 본 약관 제8조를 준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게 간편결제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참여기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으로 하며,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환수조치)

- 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행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및 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제8조(과태료)

-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②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본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5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